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7일 22시 54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등록현황 | 3 |
|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| 3 |

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2014.04.17 조회수 1283 등록자 박종열

| | |
|----------|--|
| 관리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1 |
| 담당부서 | 도시계획과 |
| 상위법령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|
| 조례 |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~ 제40조 |
| 유형 | 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
| 등록사유 | 국토도시개발 |
| 법령공표일 | 기존규제 |
| 존속기한 | 2001-10-13 |
| 규제시행/폐지일 | 2001-10-13 |
| 규제내용 | 제37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) 1. 자연경관지구 : 20퍼센트 이하, 2. 수변경관지구 : 20퍼센트 이하 제38조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) 1. 자연경관지구 : 4층이하, 2. 수변경관지구 : 4층이하 제39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)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 |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71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7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